

보고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1991년도 의료보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치과의료보험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료보험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의료보험연구소위원회에 의뢰하여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게재한 것입니다.

한·일 의료보험 비교연구(치과방사선)

대한구강악안면 방사선학회

X선 진단

(취지)

- X진단의 비용은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산정하지만 투시진단등 여기에 규정되지않고 갑점수표(제4부 화상진단)에 규정된 것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등의 비용은 갑점수표의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통칙 1. X선의 진단비용은 제1절의 각 구분의 소정점수대로 또는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의 각 구분의 소정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산정한다.

(산정원칙)

- X선 진단의 비용은 통칙 4의 규정에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단료(제1절), 촬영료(제2절), film 및 조영제료(제3절)등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절의 조합으로 산정하게된다. 따라서 이들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

(A) 진단료만을 산정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X선 film을 환자가 지참하고 와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이 경우 환자의 대리인이 film을 지참하고와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환자에 대하여 초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정하지 않는다. 또 당해 보험의료기관에는 x선 촬영설비가 없고 타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촬영을 해서 그 film에 대하여 진단을 행하는 경우 비용은 당해 보험의료기관에 따라 촬영, film 및 진단의 비

용을 전부 청구하고 당해 보험의료기관으로부터 촬영을 의뢰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촬영 및 film의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B) 진단료, 촬영료, film 및 조영제료를 합산하는 경우

① 조영제를 사용하지않고 촬영하고 진단한 경우
진단료 + 촬영료 + film값
(구분130) (구분133) (구분135)

② 조영제를 사용하고 촬영하여 진단하는 경우
진단료 + 촬영료 + film값 +조영제비용
(구분130) (구분133) (구분135) (구분136)

(부주의해서 재촬영)

- X선 촬영시 실패하여 재촬영한 경우 X선 사진 2매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촬영에 요구되는 비용은 그 이유가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부담이다.

통칙 2. 동일부위에 동시에 2이상 X선 촬영을 한 경우 제1절의 진단료는 제1의 진단에 대하여 제1절의 각 구분의 소정점수에 따라, 제2의 진단이후의 진단에 대하여는 같은 절의 각 구분의 소정점수의 50/100에 상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同一部位의 해석)

(1) '동일부위'는 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것 전부가 아니고 통상 동일 film면에 촬영되는 범위도 동일부

위라 생각된다.

(2) '2 이상의 X선 촬영'은 단순촬영, 조영제사용 촬영이라고하는 촬영방법을 구별하는 경우외에 동일 촬영방법으로 2매이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동일 치아에 대하여 2방향에서 촬영한 경우도 물론 단순촬영과 조영제촬영의 경우도 해당된다.

통칙 3. 동일 부위에 동시에 2매 이상의 film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할 경우 제2절의 촬영료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매 촬영에 대하여는 제2절의 각 구분의 소정점수에서 제2매 이후의 촬영에 대하여는 같은 절의 각 구분의 소정점수의 50/100에 상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동일 방법의 해석)

· '동일방법'이라 함은 단순촬영, 조영제사용촬영 등의 촬영방법을 말하는데 단층촬영법을 응용한 pantomography에 의한 촬영과 치과용 X선 film을 사용한 촬영과를 동일한 부위마다 동시에 행한 경우 촬영료는 동일 방법은 아니지만 구분(133의 2의 주)에서 동일방법과 같은 모양으로 취급된다.

통칙 4. full mouth촬영에서 사용된 film이 한약당 5매를 초과하는 경우는 5매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제1절 및 제2절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지않는다. 또 전악촬영법에 준해서 한악 전부를 촬영한 경우도 같은 모양으로 산정한다.

(전악촬영의 취급)

· 전악촬영은 치료종류중에 있어서 전악촬영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식증 및 그외의 경우에 있어서 구강의 치아 전부를 동시에 촬영할 때도 포함하게 된다. 또 상악 혹은 하악 전부를 대상으로 악골에 남아있는 치아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도 동측에서 산정하게 된다.

통칙 5. 학교교육법에 기준하여 대학 또는 의학부, 치학부 부속 교육연구시설로서 부속병원 그 이외의 전문병원 중에 특별히 후생대신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의료기관에 있어서 X선 진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후생대신이 별도로, 산정방법을 정하

는 경우에도 이 표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검사의 적정화)

A. 검사전반에 대한 적정화를 추진하는 한 방법으로서 타의 일반의료기관과 같은 모양의 적정화를 행한다.

B. 추가해서 대학병원등에 있는 검사 및 화상진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후생대신이 별도로 산정방법을 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의 소정점수에 관계없이 당해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또, 그 구체적 내용,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관계 방법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소화 63.5.30. 보발)

(대조부위의 촬영취급)

· 편측성 악관절증에 건강측을 대조하고자 촬영하는 경우는(귀, 팔꿈치, 무릎 등의 대칭 기관과 같다) 진단료, 촬영료 등도 건강측의 촬영에 대하여서도 이환측과 동일부위의 동시촬영을 행한 것과 같이 취급한다.

제1절 진단료

구 분

130 사진진단

1. 단순촬영

A. 치과용 X선 film을 사용하는 경우 20점
주1. 교익형 film 또는 교합형 film을 사용한 경우 소정점수에 10점을 가산한다.

주2. 일련의 증상을 확인하기위해 단순촬영을 행하는 경우 제2매째부터 촬영에 관계하는(1. 단순촬영)의 점수 및 주1.의 가산에 대하여는 그 소정점수의 50/100에 상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B. 그외의 경우 76점

(치과용 X선 film 사용한 경우)

(1) '치과용 X선 film'이란 표준형, 소아형, 교합형 및 교익형 등이 있고 치아, 치조골 등에 쓰이는 film을 말한다.

(2) 표준형 film 등을 사용해서 상하악의 전악촬영을 하는 경우의 진단료는 1악에 월 3매까지는 구분

'130의 1의(1)' 20점부터 4-5매째는 구분 '130의 1의(1)의 주2' 10점으로 산정하고 5매를 초과하는 것은 '통칙 4'에 따라 film 값 전부를 산정하게 된다.

(그외의 경우)

(1) '그외의 경우'는 8×10, Orthopan형 등의 film을 악관절 전체, 약전체 등에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2) Panagraphy, Status X-2의 경우 진단료는 구분 '130의 1의(2)' 76점으로 촬영료도 구분 '133의 1의(2)' 64점으로 산정한다.

(3) '그외의 경우'에서 상하악의 전악촬영을 한 경우는 2매까지는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3-4매는 '통칙 2' 및 '통칙 3'으로 산정한다.

2. 특수촬영 88점

(특수촬영)

• 특수촬영이란 단층촬영(pantomography포함), 입체촬영 및 Kimography를 말한다.

(악관절 규격 X선촬영)

(1) 악관절의 기능진단(하악두의 운동량과 그 경과를 계량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방법)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규격 X선 촬영의 진단료는 구분 '130의 2' 88점으로, 촬영료는 구분 '133의 2' 264점으로 산정한다.

(2) 규격 X선촬영은 특수한 악관절 규격촬영장치를 써서 주로 각 악위(중심교합위, 안정교합위, 개구경과중 異音발생위, 개구경과중의 發痛위, 최대개구위, 후퇴위 등)에서 악관절을 촬영하고 異位相에 있어서 관절외와 하악두와의 대응증상의 변화를 tracing paper상의 좌표상에 표기하고 하악두의 운동량과 그 경과를 계량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film 진단료)

•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film에 대한 진단료는 촬영방법별 및 촬영부위별로 1회로 산정한다. 따라서 동일방법으로 동일부위에 대하여 촬영한 X선 film에 대하여는 몇 장이 있더라도 1회로 산정하게 된다.

한 미 합 금		C.HAFNER		
1. 치과용 귀금속 및 수입합금 판매전문 2. DIN·ISO·ADA공인된 합금만 취급함 3. 금·백금 도매 FAX.(02) 773-1800 TEL.757-8700, 775-8700	PORCELAIN GOLD	INLAY GOLD		
	K ₂Au+Pt=98.5%	Au 86.5%	Au 80.5%	
	K ₃Au+Pt=97%	CROWN & BRIDGES		
	E-K ₂Au+Pt=93%	Au76%	Au75%	Au66.9%
	P-GN.....Au+PD=55%	Au61.6%	Au45%	Au5%
	PORCELAIN GOLD(No silver)	JWG. HI-DESK		
	C-Hsf ₂Au+PD=88.5%	DENTURE GOLD		
	P-Gsf ₂Au+PD=80%	Au 75%	Au 61.6%	